

충청북도농공지구구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27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11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○ 동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폐지

되면서

○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는 산업입지및개발에

관한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작성,

고시된 『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』을 따르도록 규정하고

있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주요골자

충청북도농공지구구성및관리조례 폐지

근거법령(따로붙임)

○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부칙제2조

○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

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(조례제1431호 1985. 7. 5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